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7일

발 의 자 : 임현주, 박영섭, 이관우, 정병기,
임태근, 이용진, 이인순

1. 제안이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9469호, 2023. 6. 13. 공포, 12.14.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·운영 비용을 추가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주택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(이하”법“이라 한다)제36조”
를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
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
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

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 원 사 업	구 분 담 률	공동주택 분 담 률	비 고(증감률)
1.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	50	50	-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나목과 같이 지원금 증감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% 증액 -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% 증액 -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
2.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	50	50	
3.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·보수	50	50	
4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유지·보수	50	50	
5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유지·보수	50	50	
6.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	50	50	
7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	50	50	
8.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	50	50	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0	5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 등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4조(지원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. 다만,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제36조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.	2. ----- ----- -----. ----- --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----- ----- -----.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아.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</u>
아. (생 략)	자. (현행 아목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